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5. 17 선고 2015가단9884 판결 [구상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
청구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영운공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6. 5. 3.

판결 선고2016. 5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,395,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4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. 4. 20. 위 · 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4. 11. 3.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·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,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.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등 합계 5,395,270원을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았다.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,395,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성원제

별지